

독일의 암호화폐 커스터디업 규제 동향



♪ 김성곤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 seezeit@korea.ac.kr

2020년 1월 1일 제4차 유럽 자금세탁방지지침의 개정을 위한 지침(이하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이라 한다)❶을 독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법률(이하 ‘국내수용법’이라 한다)❷이 발효되었다. 동 법률의 발효와 동시에 독일에서의 암호화폐 수탁업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로서 은행법(Gesetz über das Kreditwesen, KWG 이하 ‘은행법’이라 한다)의 규제대상이 되었다. 2019년 12월 12일에 공표된 유럽연합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을 독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법률에 따라 암호화폐 수탁업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도입된 것이다. 자금세탁방지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확대되었다.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이 있는 암호화폐의 다양한 사용 유형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률로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였다. 즉, 독일 정부는 암호화폐들을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함과 동시에 암호화폐 수탁업을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제도화하였다.❸

독일 은행법에 새로이 도입된 암호화폐 수탁업이라 함은 “타인을 위하여 암호화폐 그 자체 또는 암호화폐의 보관, 저장 및 그 이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키의 보관, 관리 및 보안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❹

1. 암호화폐 그 자체 또는 개인 암호키

독일 은행법은 제1조 제11항 제1문 Nr. 100에 ‘암호화폐(Kryptowerte)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조 제11항 제4문에는 암호화폐를 정의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라 함은 가치에 대한 전자적인 표시로서,

- 중앙은행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을 하였거나 보증을 한 것이 아니고,
- 화폐 또는 금전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누리지도 않지만,
- 자연인 또는 법인이 교환의 수단으로 인정을 하고
- 약정 또는 거래계의 실제관행에 따라
- 교환 또는 지불수단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거나
- 투자 목적으로 이용되며
- 전자적인 방법으로 그 이전, 저장 및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서 의미하는 암호화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1) 자금결제서비스감독법(Zahlungsdiensteaufsichtsgesetzes, ZAG)에서 의미하는 전자화폐(E-Geld) 또는
 - 2) 금전적인 가치물로서,
 - 자금결제서비스감독법 제2조 제1항 Nr. 10의 요건을 충족하거나❺
 - 동법 제2조 제1항 Nr. 11에 따른 오로지 자금결제를 위해서만 이용이 되는 것❻.
- 입법 이유에는 자금세탁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은행법 제1조 제11항 제1문 Nr. 10을 소위 포괄적 구성요건(Auffangtatbestand)으로 계획하였음을 밝히고 있다.❾

I. 들어가며

II. 암호화폐 수탁업의 요건

- 1) Richtlinie (EU) 2018/843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30. Mai 2018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EU) 2015/849 zur Verhinderung der Nutzung des Finanzsystems zum Zwecke der Geldwäscherei und der Terrorismusfinanzierung und zur Änderung der Richtlinien 2009/138/EG und 2013/36/EU (ABl. L 156 S. 43 vom 19.06.2018).
- 2) Gesetz zur Umsetzung der Änderungsrichtlinie zur Vierten EU-Geldwässcherichtlinie, BGBl. I vom 19. Dezember. 2019, S. 2602.
- 3) vgl. amtliche Begründung BT-Drs. 19/13827, S. 48 f.
- 4) § 1 Abs. 1a Satz 2 Nr. 6 KWG.
- 5) 제한된 네트워크 내에서 또는 사회적 또는 조세상의 목적을 위해 아주 제한적인 포트폴리오 또는 수단을 갖춘 자금결제시스템을 말한다.
- 6) 통신사업/통신서비스에 대한 자금결제를 의미한다.
- 7) vgl. amtliche Begründung BT-Drs. 19/13827, S. 109.



2. 타인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암호화폐 그 자체 또는 개인키의 보관, 관리 및 보안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은행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연방금융감독청의 서면에 의한 허가를 필요로 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개인키를 알고 있는 자는 포괄적인 처분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수탁업의 적격 요건은 개인키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존재하는 단계부터 구비하여야 한다. “타인을 위하여”라는 요건에는 기업 외부의 개인 또는 다수를 위하여 보관, 관리 또는 저장을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암호화폐 수탁업의 이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통한 대리권의 형태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암호화폐 보유자 스스로 자신의 암호화폐를 보관, 관리 또는 저장을 하거나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사용자를 통해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진정한 인적 회사의 결합에 따른 업무 범위 내에서 다른 사원에 의한 노동분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타인을 위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긴밀한 친족관계 구성원을 위해 암호화폐를 무상으로 관리하는 때에도 원칙적으로는 타인을 위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단순히 암호화폐 지갑(Krypto-Wallets)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 연방금융감독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자의 암호화폐 그 자체 또는 개인키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이용자들이 자신의 책임하에 관리를 하는 암호화폐 또는 암호화된 개인키의 저장을 위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거나 판매를 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암호화된 개인키에 대한 수탁을 통해 주어진 암호화폐가 분산되어 저장이 된 공개 주소에 대한 접근가능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3. 보관, 관리 및 보안조치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핵심은 암호화폐의 수탁으로 이는 제3자를 위한 서비스에 해당된다.⁸ 암호화폐 그 자체 또는 개인키에 대한 보관, 관리 및 보안 서비스 등이 법적 규제 대상으로 포함된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보관, 관리, 보안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32조 제1항 제 1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암호화폐 또는 암호화된 개인키에 대한 보관, 관리 및 보안조치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보관’이라 함은 제3자를 위한 서비스로 암호화폐를 수탁하는 것을 말한다. 고객들이 암호화폐의 보관에 사용되는 암호키를 보유하지 않고 암호화폐를 혼장임치의 형태로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 여기에 해당된다. ‘관리’라 함은 광의의 의미로 암호화폐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⁹ 보안조치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서비스로 제공하는 암호화된 개인키를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키가 저장이 된 물리적인 저장매체 (USB 또는 종이)에 대한 보관 역시 포함된다. 예를 들면 웹호스팅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등이 암호화된 개인키의 저장을 위한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장 공간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 역시 보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자금세탁 방지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암호화폐 수탁업자

독일 내에서 암호화폐 수탁업을 영위하는 하는 자는 은행법상의 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가상화폐를 법정 지불수단으로 교환을 하거나 그 반대 또는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 자금세탁방지법상의 의무자에 해당된다.¹⁰

따라서, 암호화폐 수탁업자는 법률에 규정된 다른 의무를 준수하는 외에 자금세탁방지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또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내부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담당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 신뢰성이 검증된 자이어야 하며,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 또는 제3자를 위한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의심스러운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Zentralstelle für Finanztransaktionsuntersuchungen; FIU)¹¹에 신고하여야 한다.

독일 연방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인적인 방법으로 조직된 영업활동을 요하는 수준으로 은행업을 영위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은행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연방금융감독청의 서면에 의한 허가를 필요로 한다.¹²⁾ 사업자의 거래규모나 업무영역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인적 방법으로 조직된 영업활동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은행업 또는 금융서비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이윤을 추구할 목적에는 손실을 회피할 목적도 포함된다.¹³⁾ 허가 없이 이러한 영업을 하는 때에는 동법 제54조 제1항 Nr. 2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이와 유사한 대체 수단이 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도 영업에 대한 허가를 얻어야 한다. 기업의 법적 형태(자연인, 인적회사, 법인)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¹⁴⁾

상인적 방법으로 조직된 영업이 실제로 영위되었느냐 하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은행업 분야의 거래 통념상(즉, 보통의 상인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러한 영업상의 조직이 객관적으로 요구되느냐 하는 것이 판단기준이 된다. 따라서, 사안별로 판단을 하여야 하며 동시에 다수의 은행 또는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비교적 거래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독일 연방 은행법이 적용되는 독일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인적 방법으로 조직된 영업을 필요로 하는 정도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연방금융감독청의 서면에 의한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독일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역시 동 법에 따른 연방금융감독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허가는 원칙적으로 영업 활동의 개시 전에 존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행위를 한 자는 동법 제54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동법이 발효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허가를 요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내부 시스템 및 절차를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독법상의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¹⁵⁾ 경과규정에는 2020년 1월 1일자의 허가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동법의 발효 전에 이미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자는 법률의 발효 시부터 요구되는 연방금융감독청의 허가를 임시로 받은 것으로 본다.

연방 금융감독청은 암호화폐 수탁업자를 위한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금융서비스로서의 암호화폐 수탁업에 대한 기존의 행정관행을 명문화하였다. 지침에는 암호화폐 수탁업 요건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는 특히 기존의 암호화폐 월렛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연방금융감독청의 지침은 암호화폐와 관련 산업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요청에 대하여 암호화폐 수탁업과 관련한 법률의 적용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 내지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암호화폐의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암호화폐들을 법률의 규제를 받는 금융서비스상품으로 포섭을 하였고, 이와 관련된 영업 활동을 연방금융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침은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통해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적인 규제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구축함으로써 금융 허브로서의 독일의 입지를 보다 매력적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외의 시장 참여자들을 유치하고 새로운 기업의 설립을 유도함으로써 독일 내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금융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III. 암호화폐 수탁업에 대한 허가를 받을 의무

12) 암호화폐 수탁업의 허가 신청과 관련한 상세는 BaFin, Hinweise zum Erlaubnisantrag für das Kryptoverwahrgeschäft vom 1. April, 2020.

13) vgl. Deutsche Bank, Merkblatt über die Erteilung einer Erlaubnis zum Erbringen von Finanzdienstleistungen gemäß § 32 Absatz 1 KWG vom 25. Juli 2020, S. 2.

14) vgl. BaFin, Merkblatt: Hinweise zum Tatbestand des Kryptoverwahrgeschäfts vom 02. März 2020, S. 3.

IV. 경과규정 - 은행법 제64y조

15) 경과규정에 대한 상세는 BaFin, Hinweis zur Auslegung des § 64y vom 17. Jan. 2020.

V. 결론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독일의 암호화폐 수탁업 관련 법제 주요 내용>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